

#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 2002. 9. 4. 규칙 제388호  
개정 2005.10.10. 규칙 제462호  
2007. 2. 28. 규칙 제485호  
2012. 3. 12. 규칙 제59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교육·연구·봉사활동영역의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과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고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제3조(설치)**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업적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훈련과장, 기획실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전임교원업적에 관한 사항
2. 관련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제7조(평가영역)** 평가는 교육활동영역·연구활동영역(연구업적·전문실기 경기력)·봉사활동영역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8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되, 임용기간이 6월 미만인 전임교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평가되지 아니한 업적에 대하여는 최초 평가 시 재임 중 업적에 대하여서만 심의·평가하되, 영역별 평가점수에 대하여는 아래 최초평가점수 평가방법과 같이 평가하여 연간 업적으로 인정한다.

$$\blacktriangle \text{최초평가점수} = (\text{산출점수} \div 12\text{월}) \times \text{평가된 기간(월)}$$

**제9조(평가지기)** 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의 직전학년도의 업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1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10조(평가기간)** ① 전임교원의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간의 영역별 총점을 평균하여 당해 학년도의 업적으로 한다.

② 평가기간 중 안식년·파견·연구교수·휴직·직위해제·정직 등의 기간이 1학기를 초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만료된 후 최초로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해당기간의 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 중 심의·평가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 연도별 평가점수의 인정은 제8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11조(평가대상 교원의 구분)** 평가는 이론분야 교원과 전문실기분야 교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2조(영역별 배점)** ① 전임교원 업적은 1년 단위로 교육활동·연구활동·봉사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며,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 40점

2. 연구활동 : 50점+ a

3. 봉사활동 : 10점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실적은 특별가점으로 평가하여 총점에 가산한다.

**제13조(신청서 제출)** 업적평가 신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구분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교육활동영역 평가

**제14조(평가항목 및 배점)** 교육활동영역의 평가는 학생지도 및 강의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평점 평가방법)** ① 교육활동영역의 평점은 학생지도 및 강의에 대한 실적을 학기별로 평가하며 1년간의 실적을 평균하여 평점을 산출하되,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영역을 평가한다.

1. 기간이 1학기 미만인 경우, 해당학기의 업적을 해당학년도 업적으로 한다.
2. 기간이 1학년도 이상인 경우, 직전학년도의 평가점수를 해당학년도 업적으로 한다.

## 제5장 연구활동영역 평가

### 제1절 이론분야 교원

**제16조(평가항목 및 배점)** 이론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 공연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하며,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평점 평가방법)**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영역의 평점은 별표 2에 의하여 연구 업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되, 이 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영역의 평점은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논문이나 저서의 공동집필의 경우 각각 해당 항목별 평점에서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 10인까지 20%, 11인 이상 20인까지 10%를 인정하며 공동연구의 책임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8조(논문)** ① 논문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분야별로 전문학술지를 등급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선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상이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회의 주제로 발표하였을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국내학술지에 게재되어 평가를 받은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번역 게재된 경우 그 시점에서 등급차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한다.

④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의 등급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문학술지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SCI Expanded포함),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국제적학술지를 말한다.
2. 국제학술지는 SCI·SSCI·A&HCI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국외의 전국규모학술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논문의 게재 심사제도가 엄격한 학술지를 말한다.
3. 기타 외국학술지는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않는 국외의 학술지를 말한다.
4. 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말한다. 박사학위논문은 내용의 일부를 공인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 국내학술지는 국내 전문학술지 기준에는 못 미치나 전국규모의 학술 단체에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 또는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논문집을 말한다.
6.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은 일반출판사나 기타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전문분야의 종합 학술지에의 논평·서평을 말한다.

**제19조(저서)** 저서의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공학술저서는 국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자비출판 제외)를 말한다. 국내 출판저서가 우수성이 인정되어 외국출판사에서 출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등급차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한다.
2. 국내전공학술저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와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대학교재(가상강의를 위한 대학교재 포함)를 말한다.
3. 전공분야 번역서는 전공 관련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4.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 및 이론들을 모아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5. 저서의 개정판은 이미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모아 삼분의 일 이상 개정하여 출간한 사실이 인정된 서적을 말한다.

6. 일반서적은 국제전공학술저서, 국내전공학술저서, 전공분야 대학교재, 편저이외의 저서를 말한다. 다만, 이미 업적으로 평가받은 논문 등의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연구보고서)** ① 연구보고서는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② 연구보고서의 평가항목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기관보고서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전공관련보고서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정부부처 등의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단, 공인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보고서는 제외하고,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논문으로 발행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는 연구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전공관련보고서와 학술단체, 기업체 등의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3. 기타 보고서는 국내외 활동 중 특별한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된 보고서를 말한다.

**제21조(학술회의활동)** ① 국제·국내 학술회의에서의 논문발표는 평가대상의 실적물이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좌장·토론자는 평가대상자의 역할이 프로그램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학술회의활동의 평가항목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문학술회의는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국제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2.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에서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3. 국내전문학술회의는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국내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4. 국내학술회의는 제3호의 국내전문학술회의 이외의 학술회의를 말한다.

**제22조(수상·특허 및 자격증)** ① 국가포상 및 국제학술단체상은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로 인하여 국가 및 국제학술단체로부터 수여된 상을 말한다.

② 국내·외 학회 및 학술단체상은 국내·외의 공인된 학회 및 학술단체로부터 학술업적을 인정받아 수여된 상을 말한다.

③ 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는 특허를 출원하여 국내·외에서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인증된 것을 말한다.

④ 국제심판증은 공인된 것으로 평가년도에 취득한 것을 말한다.

**제23조(교외연구비)** ① 교외연구비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당해연도에 연구교수 몫으로 학교에 입금된 연구비 총액을 말한다.

②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출 방법은 연구책임자는 총연구비  $\times [1 \div (n+1)] \times 2$ , 공동연구자는 총연구비  $\times [1 \div (n+1)]$ 로 산출한다 (n은 총연구자 수).

③ 교외연구비에 대한 배점기준은 연구비수혜 계약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다년간 연구과제인 경우 수혜연구비를 연도별로 분할하여 인정한다.

**제24조(공연)** 공연은 국제개인공연 안무 및 출연, 국내 공연 및 연출, 공인된 국제공연참가 및 공인된 국내 공연에 참가한 것을 말하며,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5조(연구업적)** 연구업적물의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인정받지 못한 연구업적 실적은 다음연도의 업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2절 전문실기분야 교원

**제26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전문실기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경기지도실적과 연구활동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경기지도실적 평가는 해당종목의 국제대회 경기실적과 국내대회 경기실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③ 연구활동실적 평가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평점 평가방법)**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실기 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업적 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전문실기 연구활동 영역의 업적평점은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한다.

③ 전문실기 경기실적 평가인정기간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실적은 다음 대회 개최 전년도까지의 연구활동영역 업적으로 인정한다.
2. 국제대회(주요 국제대회를 제외한 해당 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참가한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의 경기실적은 해당년도의 연구실적으로만 인정한다.
3. 국내대회 경기실적은 업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최소 4개이상의 국내대회 1위 입상점유율에 따라 7단계의 등급에 의한 배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장 봉사활동영역 평가

**제28조(평가항목 및 배점)** 봉사활동영역의 평가는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평점 평가방법)** ① 봉사활동영역의 평점은 1년간의 실적을 평점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봉사활동영역의 평균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개학년도 이상의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직전학년도의 평점결과를 적용한다.

## 제7장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30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매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업적평가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31조(업적평가재심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 ① 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업적평가재심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조교수 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이의신청자의 동일분야의 교수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시 타 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2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가 송부되면 이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결과에도 승복할 수가 없는 해당교원은 2차로 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2차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대학인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결과가 송부되면 해당교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장 평가결과의 활용 등

**제32조(활용의 범위)** ① 평가결과의 활용범위는 성과급 지급,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임용, 정년보장, 우수교원의 선정·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자료를 제1항의 범위외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3조(활용방법)** ① 성과급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직전학년도의 1년간의 개인별 업적평점 백분율에 의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재임용 및 재계약임용 대상자는 최근 3년간의 업적 평균평점(해외연수, 휴직 등 업적평가실적이 없는 기간은 제외)이 120점(연구전담교원은 1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문실기 교원은 (별표 2)의 연구활동 영역 평가점수가 20점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수교원의 선정·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직전학년도의 개인별 업적 평점 백분율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①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한 관련 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5조(보상 및 지원)** ① 평가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교원의 평가순위를 결정하여 우수교원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업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추천된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비지급, 국내·외 연구교수의 기회, 책임시수 단축 등 교육·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관한 보고 서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제388호, 2002. 9.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활용의 범위)의 성과급의 지급은 2003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03학년도에는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하여 활용한다.

- ② (승진임용, 재임용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 반영시기)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 (계약제 임용교원제외)의 승진임용, 재임용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의 반영은 2년간의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전문실기분야 교원의 연구활동영역의 선택 시행시기) 이 규정 시행당시 전문실기분야 교원으로 재직중인 교원(계약제 임용교원 제외)의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2004년 8월 31까지 한하여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평가를 받거나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으며, 그 선택은 평가대상자가 정한다.

부 칙(제462호, 2005.10.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5호, 2007. 2.28.)

-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의 최초 승진 및 재(계약)임용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592호, 2012. 3.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 전임교원 업적평가 신청서

(20 . 3. 1 ~ 20 . 2. 28)

성 명	한글 :	직 급	전공·교양·교직/ 전문실기
	한문 :		
	영문 :	분 야	
소 속	학(부)과		
본 임 용 일	. . . .	현 직 급 임 용 일	. . . .
전공분야		세부전공	

한국체육대학교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에 의거 업적목록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신청인 직위            직급            성 명 :            (서명)  
확인자 직위            직급            성 명 :            (서명)

붙임 : 1. 업적평가목록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1]

### 교육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최고 배점	배 점 기 준 (※전문실기분야교원만 해당)
학생 지도	- 학생지도실적 ① 학부지도교수 ② 행사(동아리포함)지도 ③ 봉사활동 지도 ④ 교육실습 지도 ⑤ 학생상담 지도 ⑥ 졸업생 추수 지도 ⑦ 야외교육 지도	10	평가항목 중 - 4종류이상의 활동에 참여 10점 - 3종류의 활동에 참여 8점 - 2종류의 활동에 참여 6점 - 1종류이하의 활동에 참여 4점
	※국가대표(후보선수)	10	-국가대표 1명당 2점(1개월이상 국가대표) -국가대표후보선수 1명당 0.4점(1개월이상)
	※학생중도탈락(퇴학·자퇴)		학생1인에 0.2점 감점
	석·박사 배출 실적	5	석사2명이상 또는 박사1명 배출 5점 석사1명 배출 3점
소 계		25	
강 의	강의 시간수(학부+ 대학원)	15	- 책임시수 강의 12점 - 책임시수 초과 강의 1시간당 1점가산 단, 3시간 초과강의까지 - 책임시수보다 부족시 1시간당 1점 감점
	강의계획서제출 (학부+ 대학원)	5	- 전 강좌의 강의계획서 제출 5점 - 최초기한내 미제출 1교과목당 1점 감점 - 강의계획서 미제출 0점
	강의평가	10	· 평점 3.5점 이상 - 10점 · 평점 3.0 - 3.4 - 8점 · 평점 2.5 - 2.9 - 6점 · 평점 2.5 미만 - 5점
	휴강 및 보강 여부	5	- 휴강이 없거나 휴강후 보강실시 5점 - 결강시 시간당 -0.5점
	성적평가의 정확성	5	- 성적정정이 없거나 정정기간내 정정 5점 - 정정기간 경과 후 정정 1명당 0.5점 감점
	신교육 기법 개발 및 운용 ① 새교재 개발 ② 강의시 다양한 보조자료 이용 ③ 사이버강의 실시 ④ 교수 개인 홈페이지 관리	10	평가항목 중 - 2종류 이상 해당시 10점 - 1종류 해당시 5점
소 계		50	
합 계		75	

[별표 2]

## 이론분야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논 문	국제전문학술지	100
	국제학술지, <b>박사학위논문</b>	<b>60</b>
	기타외국학술지	40
	국내전문학술지	50
	<b>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b>	<b>40</b>
	기타 국내학술지	20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	10
저 서	국제전공학술저서	50
	국내전공학술저서(대학교재 포함)	40
	전공분야 번역서	30
	편저	10
	저서의 개정판	10
	일반서적	5
연구보고서	정부기관보고서	30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	18
	기타보고서	12
학술회의 활 동	국제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	30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15
	국내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	10
	국내학술회의 논문발표	8
	국제전문학술회의·국제학술회의 좌장 및 토론자	5
	국내전문학술회의·국내학술회의 좌장 및 토론자	2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국가포상(훈·포장)	50
	국제학술·체육단체 수상	10
	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중앙 체육단체 수상	5
	국제특허	50
	국내특허	30
	실용신안특허	20
	국제심판자격증 취득(당해년도)	10
교 외 연구비	500만원 미만	25
	500만원-1000만원 미만	30
	1,000만원-1,500만원 미만	35
	1,500만원-2,000만원 미만	40
	2,000만원-3,000만원 미만	45
	3,000만원 이상	50
공 연	국제공연 안무 및 출연	20
	국내공연 출연(연출), 시범공연발표	15
	공인된 국제공연 참가	8
	공인된 국내공연 참가	5

[별표 3]

## 전문실기분야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I)

구분	평가항목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	국가대표 참가인원 (1인점수/ 최고10점인정)				
국제대회	올림픽	100점	70점	40점	5점				
	세계선수권대회	70점	50점	30점	3점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40점	30점	20점	2점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주니어대회)	20점	15점	10점	1점				
	아시아청소년(주니어대회) 동아시아대회	15점	10점	5점	0.5점				
	대한체육회인정국제대회 (협회에서예산지원)	메이저급	20점	15점	10점	1점			
		비메이저급	15점	10점	5점	0.5점			
국내대회	대한체육회 인정 국내대회 중 선발전, 대학대회, 일반대회의 1위 경기실적 중 4개 대회의 실적 (본인이 선택)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비고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0점	
		50% 이상	49 -40%	39 -30 %	29 -20%	19 -10 %	9 -1%	실적 없음	1위의 비율
	한국신기록 이상	1종목에 5점 가산점 부여 (1년에 2회 이상 불인정)							

- \* 대한체육회 인정 국제대회의 메이저급 대회와 비메이저급 대회는 본인이 신청하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 국내대회의 경기실적은 각 종목에서 당해년도에 참가한 모든 대회의 세부종목별 경기참가와 참가한 세부종목의 경기실적을 “국내대회 경기실적 평가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경기실적 대회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 평가방법은 대회에 참가한 세부종목별 1위 경기실적의 점유비율에 따라 해당점수를 받는다. (인정하는 대회는 대한체육회에 승인된 선발전·대학전·일반대회 모두를 포함한다)

[별표 4]

### 봉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건별 평점	배점기준
교        내	보직교원	5	- 책임시수 6시간 이하 5점 - 책임시수 9시간 이하 3점 - 기타보직 2점
	각종 위원회 위원	1	연간 2개 위원회 2점까지 인정
	동아리 지도교수	1	연간 2개 동아리 2점까지 인정
	교수연수	5	교수연수 참가 5점
	각종교내 행사 참여	1	교수회의, 입학식, 졸업식행사 참여 1회 당 1점
	분야별 전담교수	2	전문실기지도 겸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
	조조훈련 및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강화훈련	5	30일 2.5점
	교내특강	1	연간2회 2점까지 인정
교        외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심의위원	2	위원 및 임원으로 선임된 후 학교의 승인을 받아 평가기간 중 6개월 이상 재 임한 것에 한하여 건당 해당평점을 부여 한다.
	국제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2	
	국내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1	
	기업체·기타 지명한 사회 단체 자문위원 및 임원	0.5	연간 2건에 1점까지 인정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0.5	연간 4건에 2점까지 인정
	학술강연	1	전공과 관련한 강연으로 연간 2회 2점까지 인정
	교외봉사활동 및 기타	1	사회복지단체 등 봉사활동
	주요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5	
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3	연간 2회 6점까지 인정	

[별표 5]

## 특별가점 평가항목 및 배점

전문실기

구 분	평가항목	최고배점	배점기준	배 점 방 법
특별가점	학생취업실적	200점	취업자율	(취업자수/졸업생수)*200

이론분야

구 분	평가항목	최고배점	배점기준	배 점 방 법
특별가점	학생취업실적	없음	취업자수	1인당 10점(2인이상 추가 시 6점씩 추가배점)